

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
나.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	
다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3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라.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4호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	
마.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5호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바. 석재가공업의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5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·방	법 제11조 제1항제6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
해 또는 기피한 경우				
아.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	법 제11조 제1항제7호	등록취소		